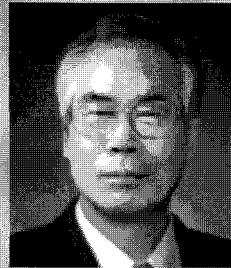


# 수의역사특별위원회



## 韓國獸醫學 發達史 日本植民地時代의 獸醫學과 獸醫制度 I

이 시 영 | 경마평론가

### 概況

일본 식민지시대라고 하면 대개 1910년을 기점으로 삼겠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식민지가 되기 이전인 1905년(고종 42년) 말에 통감부(統監府)라는 관청이 설치되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였을 뿐 아니라 모든 칙령(勅令)이나 법률은 이곳에서 만들어져 고종이나 순종황제명의로 반포된 것이다. 이는 일본의 주도면밀한 분야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들은 1910년 한일합방 후에 모든 법률을 대한제국 황제대신 일본황제명의로 바꾸면 되었다. 시행세칙과 같은 것은 조선총독이라는 이름으로 개정하면 되도록 사전에 모든 것을 준비해두었다. 이제 그 연륜은 겨우 97년 전부터 57년 전까지 40년간의 짧은 역사이긴 하지만 수의계에 미친 영향은 엄청나다 하겠다.

즉 서양수의학의 정착단계인데다 일본은 그들이 서양으로부터 도입한 수의학을 강제로 이 땅에 심었으며 또한 그들은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한반도를 병참기지화 하였고 이를 위해서 수의

축산정책에서 병참기지의 역할을 수행해야만 했다.

통감부 이전의 대한제국시대의 군부에서의 수의와 농상공부에서의 수의가 양립하는 경향을 띄우다가 통감부시절부터 시작하여 한일 합방이 되면서 농상공부에서의 수의제도는 없어지고 오직 일본 육군과 한국에 주둔하는 군사령부에서의 수의제도가 있었으며 일반 시민과 관련된 수의행정 예를 들어 도축검사(屠畜検査)와 수역예방(獸疫豫防)과 같은 것은 경찰 몫이 되었다. 한반도에는 조선주둔군사령부(朝鮮駐屯軍司令部)의 수의부(獸醫部)와 나남(羅南)에 주둔하고 있던 제19사단 수의부 그리고 서울주변에 주둔하고 있던 제20사단 수의부가 있었으며 그 외 조선주차현병사령부(朝鮮駐箚憲兵司令部) 수의부도 있었다. 이들에 속한 수의들은 모두가 일본에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었는데 매월 1회씩 세미나를 개최하여 한반도 수의기술의 발전에 기여하기도 하였다. 이의 내용은 단순히 군대에서 필요한 마의(馬醫) 이외에도 도축검사와 일반 방역업무까지도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수의사의 양성은 이원화되었는데 일본 국내에서 양성된 수의사가 한반도에 건너온 경우는 대개 겹역업무나 축산조합 또는 경찰 조직에서 종사하게 되었으며 군대에서 양성된 수의는 군 수의로 종사하게 되었다. 그러나 1930년대에 들어서서 한반도에서 수의사 양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다. 그래서 수역혈청소가 있는 인근에 수의전문학교를 설립하겠다고 발표를 하였으나 이는 실행이 되지 않았고 1931년에 이리공립농업학교에서 수의학을 교수하였으며 관립 수원농림학교에 수의학과가 신설되게 된 것이 1938년이다. 이리공립농림학교에서 수의학 교육은 이것이 한반도에서 두 번째 수의교육이라 할 수 있다. 그 첫 번째는 1908년 관립 수원농림학교의 수의속성과에서 20명을 배출한 것이 서구수의학 교육의 시초라 할 수 있다.

일반가축의 치료를 위해서 필요한 수의사가 부족하기에 일본은 각종 축산조합을 통해서 과거 조선의 전통적인 수의를 불러서 수의 강습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를하여 축산 강습회 혹은 수의강습회 또는 우의강습회라 이름하여 전국적으로 개최되기도 하였으나 불과 2년여만에 더 이상의 교육을 하지 않았다.

일본에서는 1922년에 경시청령(警視廳令)으로 “수의 및 제철공 취체규칙”이라는 것이 제정 공포된다. 이는 주로 수의업이나 제철공업의 개업에 필요한 절차를 명시하였다. 정식으로 제국의회를 통과한 수의사법이 제정 공포된 것은 1926년(소화원년) 4월 6일자로 법률 제53호로 공포된다. 이 법은 총 14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본에서는 이 이전인 1890년 (명치 23년 8월 28일 법률 제 76호)에 수의면허 규칙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규칙에 의거하여 수의사면허가 발부되기도 하였다. 식민지인 우리 나라에는 조선총독부 농상공부장관 명의로 1914년도 7월 13일에 각도장관에게 한반도에서 이 법에 의해 면허를 받아서 개업하고 있는 수의사 및 제철공에 대해서 조사해서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내나 과연 몇 명이 신고하였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 총독부에서는 1937(소화 12년) 9월 1일자로 조선수의사규칙이라는 것을 제정 공포하였으며, 이로서 한반도에서 공식적인 수의사 관련법률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수의사 국가시험이 실시되어 한반도에서 정식으로 수의사면허제도가 실시되게 된다. 그래서 제1호 수의사면허는 평안북도의 김병미(金炳迷)씨가 1938년(소화 13년) 1월 12일자로 받게되었다.

같은 날 조선총독부에서는 가축의생(家畜醫生)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정식 수의사가 아닌 자로서 가축의 진료업무에 한시적으로 종사케 하는 특별제도였다. 즉 과거의 전통 의술을 가진 자에게 7년의 기한을 정하여 진료업무를 하게 한 제도이다. 이 법의 시행세칙은 각도장관이 정하도록 하였다.

수역의 예방에 있어서는 경찰수의의 역할이 커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한반도를 대륙으로부터의 각종 전염병의 침입을 막는 방어벽(防禦壁)의 역할로 생각하였다. 그들의 수역예방사는 바로 한반도에서 수역예방사이기도 하다. 그들이 중점적으로 방역대상에 올린 전염병은

# 수의역사특별위원회

우역(牛疫)과 우폐역(牛肺疫) 탄저(炭疽) 기종저(氣腫疽) 돼지콜레라 광견병(狂犬病) 비저(鼻疽) 와 가성피저(假性皮疽) 등이었는데 일본총독부의 관보에는 매월 이들 질병의 발생상황이 게재되기도 하였으며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의 방역을 위해서 가축의 이동제한조치를 취한 사례들이 무수히 많았다. 이 결과 한반도에서 이들 질병의 종식을 가져왔으며 궁극적으로는 일본의 가축전염병의 방역을 위한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일찍부터 부산에 수출우검역소(輸出牛檢疫所)를 설치하여 일본으로 수출되는 소에 대해서 수출검역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이를 검역의 근본적인 목적은 한반도의 우수한 품질의 소를 일본에 가져가고자 하는 정책에서 나왔던 것이다. 그후 역시 부산에 우역혈청제조소(牛疫血清製造所)를 설립하여 한반도의 우역을 예방하기 위한 본격적인 조치를 실시하였다. 그들은 이곳에서 면역혈청을 제조하여 중국과의 경계지역에 인공적인 우역면역대(牛疫免疫帶)를 만들어서 중국으로부터 우역의 침입을 차단하기에 이르렀다.

일본은 식민지시대 초기에 모든 수의행정업무를 경찰이 하도록 하였으나 약 30여 년간 수행한 결과 더 이상 경찰이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

그래서 과거 경무총감부(警務總監部)에서 관장하던 수역예방이나 수출우검역과 새로운 수의사제도나 가축위생연구분야가 총독부 농무부서로 이관되거나 신설되고 도축검사업무는 후생국소관으로 이관되기도 하였다.

한편 장제사(裝蹄士)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는

꾸준히 양성되었으며 장제사 면허제도도 확립되었고 또한 장제나 제철공(蹄鐵工)에 관한 법률도 제정되었으나 식민지인 한반도에서는 군대에서만 제철공의 존재가 인정되었다. 그러나 경성공립농업학교에 제철공에 관한 양성규정이 생기기도 하였으나 일본내에서 보다는 활기가 없었다.

## 1. 行政機構上의 獸醫의 位置

### 가 軍部와 警察獸醫

먼저 살펴볼 것은 당연히 조선총독부 농상공부 식산국(殖產局)의 사무분장규칙이어야 하나 1910년 9월에 제정된 그곳에는 수의라는 명칭이나 가축질병과 관련한 용어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먼저 지적해 두어야 하겠다. 이는 한반도를 점령한 일본은 수의는 경찰이나 현병에서 관장해야 하는 것으로 알았기에 경찰과 현병조직에서 수의가 자리잡고 있었으며 수의의 업무영역도 이곳에서 찾아야 했다. 그러나가 1941년도에 들어와서야 수의라는 것과 가축질병이라는 분야가 농림분야로 옮겨지게 된다. 그러나 일부 도수와 관련되는 분야는 보건사회부 쪽으로 편입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한일합방 후에 제일 먼저 수의가 등장한 곳은 조선주차현병조례(朝鮮駐劄憲兵條例)라는 것이다. 한반도의 경찰업무를 담당하였던 곳이기도 하다. 이는 칙령 제 343호로 1910년 9월 10일 합방이 되면서 즉시 공포하였는데 이는 조선총독부관제가 9월 13일에 공포된 것에 비하면 3일이 빠른다. 이 조례 9조에는 현병대사령부와

각 현병대에는 經理部 衛生部 獸醫部의 將校相當官과 准士官과 下士와 蹄鐵工長과 高等文官과 判任文官을 둔다라고 되어 있다.

조선총독부령 제48호로 반포된 조선주차현 복무규정에 수의에 대해서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제16조에 “獸醫는 憲兵司令官의 命을 承하야 馬의 衛生事務에 服하야 裝蹄剔毛의 業務를 監督하고 尚히 高級獸醫는 次級獸醫以下の 業務를 監督함이라. 蹄鐵工長은 獸醫의 命을 承하야 工業을 監督하고 作業品과 及 諸物品을 監守하고 且 朝히 工業에 從事하고 治療調劑를 補助하며 病馬의 看護를 擔任하야 裝蹄와 剔毛 其他 馬의 衛生에 關하는 細務에 服함이라”

당시의 관보는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일문과 한글을 동시에 게재하였는데 한글본을 그대로 옮겨 본 것이다. 대개 오늘날 사용하는 용어와 비슷하나 특히 제철공장의 업무에서 “且 朝(궁)히 공업에 종사하고”는 ‘제철공장 스스로 편자를 만드는 업무에 종사한다’라는 뜻이다. 이와 비슷한 규정은 대한제국시대의 군대내무서에서도 나타났는데 군대에서는 제철공 오늘날의 장제사가 수의보조기능을 수행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은 1910년 9월 13일에 칙령 제354호로 조선총독부관제를 발표한다. 이의 세부내용은 조선총독부에는 정무총감을 두고 총무부와 내무부 탁지부 농상공부를 둔다고 했으며 농상공부에는 식산국과 상공국을 둔다고 했으며 산하기관으로 권업모범장을 두어서 농사에 관한 시험과 농림학교를 맡도록 했다. 10월 1일에는 총독부

훈령 제2호로서 총독부사무분장규정을 발표하였는데 내무부에는 지방국 산하에 위생과를 두었으며 그곳에서 공중위생과 관련되는 사항을 관장하였다.

농상공부에는 식산국에 농무과(農務課)와 산림과 수산과를 두었는데 농무과에서는 1. 농업 급 잠업에 관한 사항. 2. 축산 급 수렵에 관한 사항. 3. 국유 미간지(未墾地)에 관한 사항. 4. 관개에 관한 사항. 5. 권업모범장(勸業模範場) 및 농림학교에 관한 사항을 두어서 수의는 농상공부에서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고 축산분야에 속한 것도 아니다. 다른 항에서 살펴보면 수의는 경찰분야가 되었기에 농상공분야의 업무가 아니었다. 그러나 농상공분부에서 수의와 가축위생이 등장하는 것은 1941년대에 들어가서 등장하게된다.

동일한 날자에 발표된 각도 사무분장규정에 의하면 내무부에는 지방계(地方係) 권업계(勸業係) 학무계를 두는데 지방계에서는 9. 위생 행정 및 병원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권업계에서는 1. 농상공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이곳에서도 수의는 찾아 볼 수 없는 대목이다.

역시 동일한 날자에 공표된 조선총독부 경무총감부 사무분장규정에는 경무총감부에는 서무과 고등경찰과 경무과 보안과 급 위생과를 둔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6조 위생과에는 보건계 및 방역계를 둔다라고 되어 있으며, 보건계에 있어서는 죄의 사무를 관장한다. 10. 도축에 관한 사항. 방역계에서는 죄의 사무를 관장한다 3. 수축위생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여

# 수의역사특별위원회

경무총감 즉 경찰총에서 도축검사와 가축방역 업무를 관장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수의라는 항목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대한제국시대에서 살펴 본대로 군대에서 수의를 담당하였기에 일반 행정부서에서 수의라는 용어를 사용할 필요성이 없었을 것이다.

## 나. 朝鮮總督府警察官署官制에서 獸醫

일본은 한국을 병합하기 위하여 이미 1905년 11월 17일 한일간에 체결된 한일협상조약에 의거하여 통감을 두도록 하였으며, 1909년 7월 30일자로 군부가 해체되었으며 다음해인 1910년 6월 24일에는 경찰권마저 일본에 주고 말았다. 1910년(융희4년) 6월 25일자 호외에는 공고란에 “한국정부는 경찰사무를 일본국 정부에 위탁에 관하여 한국정부와 통감부는 좌와 같이 약정 함”이라고 해서 한국측에서는 내각총리대신 서리 내부대신 박제순(朴齊純)과 일본측에서는 통감 자작 사내정의(寺內正毅)가 관인을 찍어 교환하므로 대한제국의 경시청(警視廳)은 없어지고 말았다. 대한제국은 6월 30일자로 내부(内部; 내무부)관제에 있던 경찰이라는 용어를 모두 삭제한다는 칙령을 내렸고 또한 칙령 제34호로서 경시청관제를 폐지한다는 칙령을 내렸다.

이에 통감부에서는 칙령 제396호로 일본황제의 명의로 통감부경찰관서관제(統監府警察官署官制)라는 것이 발표된다. 이는 후에 조선총독부경찰관서관제(朝鮮總督府警察官署官制)로 개명된다. 이때부터 우리 나라의 수의행정은 완전히 경찰이 관장하게 된다. 제1조에서 “조선총독부 경찰관서는 조선총독의 관리에

속하며 경찰 및 위생(衛生)에 관한 사무를 관장 한다”라고 해서 위생과 관련되는 제반업무를 경찰이 맡겠다고 했다. 경찰관서의 업무는 경찰 업무와 위생의 업무 두 가지로 크게 대별할 수 있다. 또 지방의 경찰서장은 현병대장의 임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제5조의 직원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警務總長			勅任
警務官	專任	3인	奏任
警務部長			奏任
警視	專任	36인	奏任
警察署長			
通譯官	專任	7인	奏任
技士	專任	3인	
港務官	專任	1인	奏任
港務醫官	專任	1인	奏任
獸醫官	專任	1인	奏任
屬			

警夫 港吏 港務醫官補 獸醫官補 技手 通譯生  
은 모두 專任 370인 判任

제14조의 3 獸醫官은 上官의 命을 받아 獸畜에  
관한 檢疫, 檢查 및 醫務를 管掌한다.

제15조 獸醫官補는 上官의 指揮를 받아 獸畜  
에 관한 檢疫, 檢查 및 醫務에 從事한다.

수의관과 그의 업무에 관한 규정은 통감부에 서 제정할 당시에는 없었던 것이 1912년 3월 27일 칙령 제 28호로 개정되어 항무관과 항무의관과 함께 추가된 것이다. 이로서 한반도 식민지배를 위한 삼대산맥인 조선주차현병사령부에서의 수의관과 경찰관제에서의 수의관 조선주둔군 사령부의 수의단이 1941년까지 이 나라의 수의행정을 관장하였다.

# 韓國獸醫學 發達史

## 日本殖民地時代의 獸醫學과 獸醫制度 1

대한수의사

다른 하위규정인 조선총독부 경무총감부 사무분장규정에 의하면 경무총감부에는 서무과 고등경찰과 경무과 보안과 위생과를 둔다고 했으며 제6조에서 위생과에는 보건계와 위생계를 둔다. 보건계에는 총 12개항목이 있는데 그 중 10항목에서 도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위생계에서는 8개항목이 있는데 그중 7이 출우검역에 관한 사항, 8. 수축위생에 관한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는 오늘날의 수의행정이라 할 수 있는 모든 분야를 경찰이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1918년 6월 1일 경상남도지사 渡邊豊日子의 명의로 반포된 警察署處務規程 제26조 위생계는 좌의 사무를 처리한다.

1. 獸疫防疫에 關한 事項
1. 屠畜에 關한 事項
1. 衛生關係 諸 營業 取締에 關한 事項
1. 其他 保健위생에 關한 事項

상기규정에 의하면 말단 경찰서에서는 위생계에서 수역 방역과 도축장 또는 수육영업취체 규칙과 같은 것 우유영업 등을 관할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경상남도의 것을 인용하였는데 다른 도의 것도 내용은 비슷하다.

이러한 경찰수의는 시간이 흐를수록 변경되어 가고 있었다. 그들은 약 30여 년간의 경찰에서 수의행정을 담당하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했기에 이제는 일반행정기구에서 다룰 수 있다고 판단했는가 보다. 일본국내에서의 행정개편이 먼저 이루어졌다. 1923년에 종래의 마정국(馬政局)을 폐지하고 농무성(農務省)에

축산국을 두어서 축정(畜政) 축산(畜產) 마산(馬產) 가축위생(家畜衛生)의 4개과를 두었다. 한반도에서는 그들보다도 훨씬 늦은 1941년에 대대적으로 행정개편이 일어나고 있다.

1941년 조선총독부 사무분장 규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8조의 2 제4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 家畜傳染病에 關한 사항
6. 獸醫師 및 家畜衛生에 關한 사항
7. 種馬牧場, 種羊場, 種牲育成所, 獸疫血清製造所 및 移出生檢疫所에 關한 사항

이중 5항은 과거 경찰에서 관장하던 수역예방에 관한 사항을 용어만 바꾸었으며, 6항은 과거 어느 규정에도 없던 것이다. 7항은 과거 총독부 직할관장부서였던 것인데 총독부사무에 귀속 시켰다. 이중 수역혈청제조소는 다음해인 1942년 5월 6일부로 가축위생연구소로 개명되면서 사업의 법위도 대폭 확장되었다.

역시 동일한 날짜에 공포된 조선총독부 권업모범장 사무분장규정에는 본장에서는 보통농사와 축산(畜產) 및 분석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므로 수의가 아닌 축산분야를 권업모범장에서 연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규정의 상위규정인 조선총독부 권업모범장관제에는 권업모범장에서는 종금(種禽)과 종축(種畜)의 배부업무를 관장하고 농림학교를 부설하고 교장은 권업모범장장이 겸임하도록 되어 있다. 이규정은 이미 대한제국 말기에 있던 규정인 바 단지 공포자가 순종황제대신 일본황제인 명치(明治)라는 것이 다른 점이다.

# 수의역사특별위원회

다. 최초의 수의관계 법률인 포사규칙(庖肆規則)

## 肆規則

1896년(개국 505년; 建陽 元年) 1월 18일 대한 제국에서는 법률 제1호로 포사규칙(庖肆規則; 푸주; 우리말로 푸주간이라는 단어인데 도살장을 뜻한다)이라는 것이 제정 공포되었는데 이는 우리 역사에서 수의관계 법률 중 제1호라는 뜻에서 그 의미가 크다.

### 법률 제1호 포사규칙

**제1조** 庖肆營業을 願하는 者는 該管官廳을 經 하야 觀察使에게 准許狀(준허장)을 請受함이 可함. 但 准許狀은 農商工部에서 刻板印出해야 觀察使를 經하야 撥給함.

**제2조** 准許狀을 請受하는 者는 准許料金 10元 을 納함이 可함

**제3조** 准許狀을 流失 或 損傷하거나 准許狀을 領受한 後에 移居 或 改名하거든 該管官廳에 申告하여 改領함을 請함이 可함. 但 前條의 准許料金을 再納함이 可함.

**제4조** 准許狀은 他人에게 貸與 或 紿與함을 得지 못함.

**제5조** 營業을 廢止하는 者는 該管官廳에 申告하여 准許狀을 還納함이 可함.

**제6조** 庖肆는 基地로 從하여 左開五等으로 分함.

一等地 每一日에 1頭以上 屠하는 地  
二等地 每二日에 1頭씩 屠하는 地  
三等地 每三日에 1頭씩 屠하는 地

四等地 每四日에 1頭씩 屠하는 地

五等地 每五日에 1頭씩 屠하는 地

**제7조** 稅金은 左開 五等으로 分함.

一等地	每一月	金 24元
二等地	每一月	12元
三等地	每一月	8元
四等地	每一月	6元
五等地	每一月	4元 80錢

**제8조** 稅金은 每月 月終에 該管官廳으로서 準捧함.

**제9조** 營業者는 營業에 關한 帳簿와 屠場을 當該官吏가 臨檢하는 時는 拒함을 得지 못함. 但 臨檢官吏는 其 證票를 携帶함이 可함.

**제10조** 第一條의 準許狀을 不受하거나 或 借得하여 潛屠하는 者는 三元以上 三十元以下의 罰金에 處하고 現品 及 器具는 没收함. 但 既賣한 者는 其 價額을 徵收함.

**제11조** 第九條의 檢查를 拒하는 者는 二元以上 二十元以下의 罰金에 處함.

**제12조** 第三條 第五條의 申告를 慵慢한 者는 一元 以上 五元 以下의 罰金에 處함.

**제13조** 稅納을 遲延한 者는 五元以上 五十元以下의 罰金에 處하고 仍하여 該 稅額을 徵收함.

**제14조** 此規則 施行에 關하는 細節은 度支部大臣이 定함.

이상은 우리 나라에서 제정된 수의계의 최초의 법률로서 후에 이는 도수규칙이라는 이름으로 개정된다. 포사는 것은 도살장이라는 순수한 우리말인 것 같다. 당시 개화의 물결을 타고 일본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대한제국에서 만든 법률의 하나이다. 당시 용어와 오늘날의 용어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접미사나 토씨 그리고 띄어쓰기는 현대어로 고치고 그 외는 법률상 용어이기에는 그대로 옮겨보았다. 오늘날의 용어와 한번 비교해 볼만한 일이다.

이 법의 실제내용은 국민건강이나 위생과는 동떨어진 단순히 세금을 걷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세절목은 택지부대신이 정한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관보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세절목을 택지부(度支部; 오늘날의 재무부에 해당)대신이 정한다는 것 자체가 세금과 관련되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허가는 어디까지나 농상공부에서 했으며 임검관리(臨檢官吏)라는 것이 오늘날의 축산물검사원에 해당될 것이다.

## 屠獸規則

이 법률은 13년 후에 개정되어 법률 제24호로서 도수규칙(屠獸規則)이라는 것으로 된다. “朕이 屠獸規則를 裁可 ᄒᆞ야 兹에 頒布케 ᄒᆞ노라” 御名御璽 隆熙 三年 八月 二十一日 內閣總理大臣 李完用 内部大臣 朴齊純 度支部大臣 任善準의 명의로 반포되었다. 이 법률 역시 당시의 통감부의 의도가 깔려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수의행정을 농상공부 대신 경찰에 맡길 것을 이미 작정하였기에 도수규칙이 제정될 때 농상공부는 배제되고 내부대신과 택지부대신이 부서하였다. 당시는 대한제국 경시청이 있었기에 경시청의 상급관청이 내부였기에 내부대신으로 하여금 부서하게 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13년 전인 개국505년(1896년)에 법률 제1호였던 포사규칙(庖肆規則)은 이 법의 제정으로 폐기되었다. 그러나 포사규칙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자는 융희3년에는 새로 영업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한 것으로 보아 사문화 된 법률은 아닌 것 같다.

이 법률의 제1조에는 식용에 供하는 牛 馬 羊 豚 및 犬의 屠殺解體는 屠殺場 이외의 장소에서 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제2조에서는 도축장의 허가는 지방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또한 제5조에는 屠獸檢查 屠獸檢查員 檢查員 屠殺解體料 및 屠場取締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은 내부대신의 인가를 득하여 지방장관이 이를 정함이라고 했다. 이 규칙에 의거하여 각도에서는 도수규칙시행세칙(屠獸規則施行細則)이라는 규정을 제정 공포하게 되는데 융희3년 12월 15일에 발표된 충청남도령 제7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포자는 忠淸南道觀察使 崔廷德의 명의로 되어 있다. 이것이 합방 후에 다시 각도장관의 명의와 일본어로 개정되어 일제히 발표된다. 이때 이미 수육의 취체(取締)에 관한 허가는 경찰서가 가지도록 명문화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각도에서는 도수규칙시행세칙과 아울러 수육판매영업취체규칙(獸肉販賣營業取締規則), 우유영업취체규칙(牛乳營業取締規則) 등을 제정하게된다.

### 第 一 条 第 七 號 令 屠獸規則施行細則

**제1조** 屠場營業의 許可를 得하고자 하는 者는 左의 事項을 具備하여 所轄 警察官署를 經하여 觀察使에게 出願함이 可함

# 수의역사특별위원회

1. 屠場의 位置 敷地 建物의 面積 및 圖面

2. 構造仕樣書 및 그 圖面

3. 落成期日

4. 屠殺解體料

5. 屠場敷地가 借地이면 地主의 承諾書

前項事項을 變更코자 할 時도 亦同함

제2조 屠場을 落成할 時는 所轄 警察官署에  
報明하여 檢查를 受하고 其 認可를 受하지 아  
니하면 使用함을 不得함.

제3조 左의 境遇에는 10日以內에 所轄 警察官  
署를 經하여 觀察使에게 報明함이 可함. 但 第  
2號 境遇에는 戸主 又는 家族으로부터 其節次  
를 함이 可함.

1. 廢業 休業 轉居 又는 改名할 時.

2. 屠場營業者가 死亡 或은 所在地不明한 時.

제4조 屠場의 設立지를 左의 三等으로 함  
一等地 二等地 三等地

제5조 屠場의 構造 左의 各號를 據함이 可함.

1. 屠場의 周圍는 適當한 堤堰(제언; 방축) 又는  
牆壠을 設할 事.

2. 屠場에는 繫留所 生體檢査所 屠室 內臟取扱  
室 汚水溜 及 事務室을 設할 事.

3. 屠室의 地盤의 石 又는 煉瓦 或은 厚板張으  
로 하고 汚水溜로 通하는 溝를 設하고 適當한  
句配를 付할 事. 屠場의 內壁은 四尺以上의 石,  
煉瓦造로 하던지 或은 金屬으로 腰張을 할 事.

4. 繫留所 及 內臟取扱室의 地盤은 屠室을 準  
할 事.

種 別	屠殺解體料	牛	一頭에 金一圓二十錢
馬	金一圓	羊	金四十錢
豚	金四十錢	犬	金十五錢

5. 汚水溜는 屠室로부터 三間以上의 距離를 有  
하고 不滲透質의 材料 又는 厚板으로서 築造  
하고 其 周圍의 壁은 地面으로부터 五寸以上  
을 높게하고 且히 雨水를 防護만한 裝置를 具  
할 事.

6. 生體檢査所는 建坪 二坪以上으로 하고 獸體  
의 保定을 要할 設備를 具할 事.

7. 屠場의 敷地는 屠室의 周圍 十五間以上을  
具할 事. 二等地에 在하여는 前條 各號中 繫留  
所 生體檢査所를 省略함을 得함. 三等地에 在  
하여는 第一項을 不據함을 得함.

제6조 屠場營業者는 屠殺解體에 從事하는 者  
의 住所姓名 年齡을 所轄 警察官署에 報明하  
여 認可를 受함이 可함.

제7조 警察官 又는 屠獸檢査員의 檢查를 受하  
지 아니하면 屠殺解體함을 不得함.

제8조 屠肉 內臟 其他 食用에 供하는 部分은  
警官 又는 屠獸檢査員의 檢印을 受하지 않  
으면 場外로 搬出함을 不得함.

제9조 左의 事項은 警察官 又는 屠獸檢査員의  
指示에 從함이 可함.

1. 食用에 供하지 못하는 屠肉 內臟 其他 部分  
의 處分.

2. 屠殺解體한 後 傳染病에 罹함인 줄을 發見한  
境遇에 消毒의 方法施行.

제10조 屠畜時間은 日出時부터 日沒時까지로  
함. 但 警察官의 許可를 득할 境遇에는 不在此  
限이요.

제11조 屠殺解體料金은 左額에 越치 不得함.

屠殺月日 獸 類 牛雄의 區別 毛 色 年 齡 屠殺付託者 住所姓名

屠場營業者는 前項料金外에 地方費賦課規則에  
定한 稅金을 屠殺付託者에게 請求함을 得함.  
屠場營業者는 前二項 以外 金額 又는 物件을  
受함을 不得함.

**제12조** 屠獸營業者는 屠殺解體할 獸類 頭數  
及 屠殺할 日時를 前日에 所轄 警察官署 又는  
巡查駐在所로 報明함이 可함.

**제13조** 屠場營業者는 左開樣式에 依하여 臺帳  
을 調造하여 整理保存하고 且히 同樣式에 準  
하여 翌月 三日에 前月分을 所轄警察官署 又는  
巡查駐在所에 報明함이 可함.

**제14조** 屠場營業者는 正當한 事由 없이 屠殺解  
體를 拒함을 不得함.

**제15조** 場主는 屠場營業에 關하여 家族 又는  
雇人의 所爲라도 其責을 當함.

**제16조** 本則을 違反하고 又 本則에 基하는 警  
察官署의 處分 或은 指示에 從하지 않는 者는  
十日 以內의 拘留 又는 十圓 以下의 罰金에 처함.

附則 제17조 本則은 頒布日로부터 施行함.

1896년의 포사규칙에서는 도축세 징수를 규정  
하고 있었으나 1909년의 도수규칙에서는 도축세  
를 각도에 위임하였는데 내부대신 명의로 지방  
비회계규칙이 제정되고 이에 의하여 각도에서  
는 지방비부과금 부과규칙이라는 도령을 제정  
하여 도장세를 징수하였다. 1909년 9월 27일자  
로 발표된 경기관찰도령 제2호에 의한 지방비  
부과금부과규칙 제1조에 도장세가 나오는데  
소 1두당 1원, 돼지는 20전, 양은 20전을 정하  
였다.

이는 각지방에 따라 그 액수가 달랐다.

경상남도의 경우는 소 한 마리당 75전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다른 가축에 대해서는 명기하지  
않았다. 강원도의 경우는 소 한 마리당 1원,  
돼지는 10전이었다. 또한 화폐단위가 달라졌  
다. 과거에는 元을 사용했는데 이번에는 圓을  
사용한 것이다. 元은 중국에서 사용하던 화폐  
단위이고 圓은 일본에서 사용하던 단위이기에  
일본식을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충청남도에서 제일 먼저 도수규칙시행세칙이  
라는 것이 만들어졌고 이후 이해 말에는 전국  
각도에서 이 규칙이 제정되었다. 거의 규칙의  
내용이 비슷하나 지방세부과규정에 의한 도장세  
만이 위에서 설명한대로 달랐다.

### 獸肉販賣營業取締規則

1910년에 들어서는 수육판매영업취체규칙(獸  
肉販賣營業取締規則)이라는 것이 역시 각도  
관찰사명의로 반포된다. 제일 먼저 반포된 것  
이 강원도 觀察使 李圭完의 명의로 공포된 것  
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1조** 本則에서 獸肉이라 稱함은 食用에 供하  
는 牛 馬 羊 豚 犬의 肉을 말한다.

**제2조** 獸肉販賣營業을 하고자 하는 자는 所轄  
警察官署에 請願하여 그 許可를 받아야 한다.  
行商者에 있어서는 警察署에서 行商鑑札을 請  
受하여 이 업에 從事할 때는 이를 携帶하여야  
한다.

**제3조** 獸肉은 隆熙3년 12월 江原道令 제6호  
屠獸規則施行細則 제8조의 檢印이 있는 자 또  
는 警察官吏의 承認을 經한자가 아니면 販賣  
할 수 없다.

# 수의역사특별위원회

**제4조** 腐敗된 것이나 혹은 傳染病毒의 汚染의  
憂慮가 있는 獸肉은 販賣할 수 없다.

**제5조** 獸肉의 置場 또는 容器에는 塵埃蚊蠅  
等의 附着을 防止할 裝置를 하여야 한다.

獸肉運搬容器는 覆蓋를 갖추고 또 液汁이 渗漏하지 않는 것을 使用하여야 한다.

**제6조** 獸肉의 置場容器運搬器 其他 衡俎等은  
恒常 清潔하여야 한다.

**제7조** 獸肉은 警察官吏가 檢查하여 不良으로  
認定된 것은 販賣를 할 수 없다.

前項에 依하여 販賣가 禁止된 獸肉의 處分은  
警察官吏의 指揮에 따라야 한다.

**제8조** 左開 境遇에 있어서는 10일 以內에 所  
轄 警察官署에 申告하여야 한다. 但 제4호의  
境遇에 있어서는 戶主 또는 家族이 그 節次를  
行하여야 한다.

1. 營業者의 住所, 營業所 또는 姓名을 變更할 때.

2. 鑑札을 亡失 혹은 毀損했을 때.

3. 閉業할 때

4. 營業者가 死亡하거나 所在 不明할 때.

前項 제3호 제4호의 境遇에는 行商者일 境遇  
는 鑑札을 還納하여야 한다.

**제9조** 左開 各號 1에 該當할 때는 그 營業을  
停止 또는 禁止한다.

1. 本則을 違反하여 處罰을 받았어도 改悛의  
情狀이 보이지 않는 者.

2. 所在不明된 者.

**제11조** 本則 제2조 乃至 제6조 제8조에 違反한  
者 또는 제7조의 命令에 따르지 않는 者 또는  
停止中에 營業한 者는 5圓의 罰金 또는 10일  
以下의 拘留에 處한다.

**제11조** 本則은 隆熙 3년 12월 江原道令 제6호  
屠獸規則施行細則 제16조에 依하는바 一等地  
및 二等地 以外의 土地에는 適用하지 않는다.

**제12조** 本則은 發布日로부터 施行한다.

이들 규정은 조선총독부로 옮겨온 이후 대폭적  
으로 개편된다. 도수검사원이라는 제도가 신설  
되고 도수검사는 도수검사원과 경찰관리가  
하도록 하며 검인이 없는 것은 판매하지 못한  
다. 여기서 소개한 것에 비하면 상당히 엄격히  
다루고 있다.

1941년도에 일본은 대폭적으로 업무를 개편하  
는데 도수에 관한 것은 과거 경찰에서 하던 것  
을 농무분야가 아니고 후생국(厚生局)에 이관  
하고 있다. 제12조에 후생국에는 보건과 위생과  
사회과 및 노무과를 둔다라고 했으며 보건과  
의 6항에 도장(屠場) 도축(屠畜) 식육(食肉) 및  
우유(牛乳)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게 하였다.

30여 년만에 경찰에서 일반행정기관으로 돌아  
왔으나 수의와는 별개의 분야에서 관장하게 되  
었다.

완벽한 귀질환 전문치료제

## 덱 소 타일

### ■ 특 장점

- ▣ 세균성, 곰팡이성 외이염치료+이도내의 기생충 구제
- ▣ 지속적인 치료효과
- ▣ 사용하기 간편한 용기

〈Ear mite 전문치료제〉

**Virbac**